

「2026년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

립스(LIPS) 프로그램 소상공인 모집 공고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생활기반(비기술)의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선도기업으로 성장 및 도약을 지원하는 『26년도 립스(LIPS) 프로그램』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LIPS : Local &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

2026년 3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립스(LIPS)프로그램」 간단소개

①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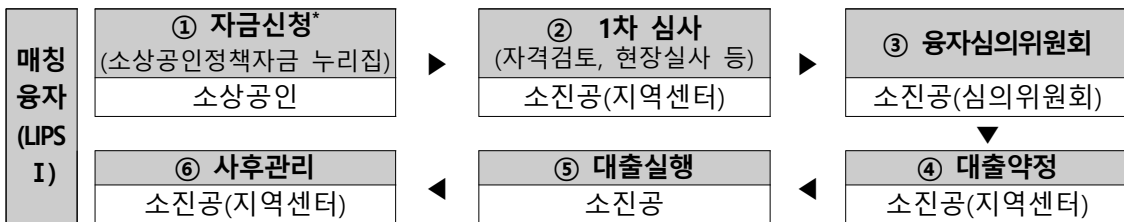
- ☞ (LIPS I)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매칭용자(정책자금)를 지원
- (LIPS II)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브랜딩·디자인 고도화, 해외진출 등을 위한 사업화를 지원

② 립스 I·II의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민간투자 절차(先투자)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용자 (LIPS I)



* 투자, 추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소상공인에 한하여 자금신청 가능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 II)



* (전담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기관)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③ 틱스 프로그램(TIPS) 수혜이력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 테크기반 스타트업이거나 틱스 프로그램 수혜기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목적)** AC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생활기반 유망 소상공인 선별, 민간투자자와 정부자금을 매칭지원하여 기업가로 성장지원
- **(지원대상)**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先투자받은 유망 소상공인(업력 1년이상)
- **(신청기간)** 2026년 4월 1일(수) 10시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용자 (LIPS I)**
 - 소상공인 정책자금(ols.semas.or.kr) - 직접대출 신청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 II)**
 -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2026년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사업 립스(LIPS) 프로그램 소상공인 모집 공고' 본문 하단 '신청'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용자(LIPS I)	• 민간운영사가 先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매칭용자(정책자금) 지원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II)	• 투자금의 최대 3배까지(최대 2억원, 자부담 30%)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용자 (LIPS I)** : 직접대출 360억원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 II)** : 사업화 지원 300억원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한도	자기 부담금	선정 평가
시드립스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최초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250 개사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30%	수시 (월단위)
스케일-업 립스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성공요건 충족한 소상공인	50 개사	최대 2억원		

□ (공통) 접수일 기준 아래의 요건(①~④)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先투자) 중기부에서 지정한 민간운영사로부터 先투자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별첨]로부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투자 유치건

* 투자계약 체결 및 주금납입·등기완료 必 (투자확약 미인정)

②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③ (업력 1년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로부터 접수일 기준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 인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④ (업종) 정책자금 용자 제외 업종^[참고1]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세부 지원자격) 위 공통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사업별 세부 지원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신청·지원 가능

①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용자(LIPS I)

○ (대출제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참고2]이 확인되지 않을 것

* 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공동, 각자)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 대상

②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 II)

○ (지원유형) 아래의 유형별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신청·지원 가능

유형명	지원 대상
시드립스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최초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
스케일-업 립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성공요건 충족 < 스케일업 성공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달성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전년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참고6]의 50% 이상 ②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직·간접 수출액 3만불 이상

○ (신청제외 대상) 아래의 요건(1~7)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평가·선정단계에서 신청 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탈락 또는 선정취소 처리 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1. 휴·폐업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2.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신용정보등록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4. 참여제한	- 신청 대표자 및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5. 동시수행불가	- 동일 연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등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참고7]에 선정 되어 지원 받은 경우
6. 기술기반	- 테크기반 스타트업이거나 틱스 프로그램(TIPS) 수혜기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7. 기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1) 민간투자 및 추천 절차

- (1단계, 투자유치)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는 투자대상 발굴·심사를 거쳐 유망 소상공인에게 先투자 실시
 - (기 투자) 지정된 운영사로부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칭용자 신청자격 부여
 - (신규투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제안서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운영사에게 e-mail 제출
 - * 투자제안서 제출 후 평균 4주 이내 회신 예정이며, 검토과정에서 지연 될 수 있음
- (2단계, 소상공인 추천)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先투자 실시한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와 함께 공단에 추천

◆ 유의사항

- 1) 중기부가 지정한 립스 운영사만 인정 가능 * [별첨] 운영사 현황 참조
- 2) (LIPS I) 先투자 추천서류 등은 운영사가 공단으로 제출하며, 공단은 제출서류를 통해 투자추천 적정성 검토 후 적정 업체의 자금 신청을 위해 금융부서에 정보(DB) 전달
 - * 정보(DB)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책자금 신청 시 “대상기업 아닙니다” 팝업 공지

(2)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용자 (LIPS I)

- (1단계, 자금신청) 운영사가 공단으로 先투자 추천서를 제출하고 정보 등록이 완료된 이후,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자금신청
- (2단계, 1차심사) 대출제한사항 검토 및 사업성평가, 현장실사 등 용자 여부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역센터에서 1차 심사 실시

◆ 유의사항

- 1)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2)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 3) 신청업체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사업성평가와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3단계, 융자심의위원회) 1차 심사완료 건에 대해 ‘매칭융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융자 승인금액 심의·확정

◆ 융자심의위원회 참고사항

- (개최주기) 매월 1회 (단, 심의 기업수가 많을 경우 2회 이상 개최 할 수 있음)
- (심의방법) 소상공인과 민간 운영사는 심의위원회 필수 참석
 - (소상공인) 사업추진계획, 채무상환 계획 등 아래 평가항목에 대한 발표 실시
 - (운영사) 추천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엑시트) 계획 등 발표 실시
- * (평가시간) 총 25분으로 진행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평가항목 >

평가영역		평가내용	배점
정성	기업가 정신	▶ 기업가·장인정신, 추진실적(성과) 등	10
	사업성	▶ 사업추진계획, 시장진출, 판매전략 등 전문성 및 경쟁력 등	20
	사업수행역량	▶ 전문성, 성장가능성, 자금집행 적정성 등	20
	채무상환가능성*	▶ 채무상환 계획의 적절성, 상환의지 등	20
	파급효과	▶ 경제적, 사회적 파급 기대효과 등	20
	(운영사) 사후관리	▶ 운영사의 추천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엑시트) 계획 등	10
가점	기업가형 소상공인 인증기업 * 신청사 졸업,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5

*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등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

- ※ 융자심의위원회 대상기업은 사전에 발표자료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안내 예정
- ※ 심의방법, 평가시간, 평가항목은 변경 될 수 있음

□ (4단계, 약정·실행 및 사후관리)

- (약정·실행) 최종심의결과 통보 및 지역센터에서 방문(대면) 또는 전자약정 체결 후 대출금 지급
 - * 약정체결방식 : 법인사업자-대면약정, 개인사업자-전자약정(문자송신)
-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정책자금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을 실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구 분	내 용
점검시기	- 대출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점검서류	- '대출금 사용내역표' 작성본 및 대출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사후관리 관련 제재조치>

구 분	내 용
서류 미제출 등	-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14일 이내의 추가 유예기간 부여 및 서류 제출 요구
	- 최종 서류 미제출 시, 대출금의 조기 회수 및 기한의 이익상실 조치 (대출금 원금 전액상환 및 지연배상금 부과) 및 3년간 신규대출 취급 제한
용도 외 사용 발견 시	- 점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용도 외 사용 금액 상환 완료 요구 - 최종 상환 미이행 시 대출금 기한의 이익상실 (대출금 원금 전액상환 및 연체이자 부과) 조치 및 3년간 신규대출 취급 제한

(2)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 II)

- (1단계, 신청·접수) 운영사가 공단으로 先투자 추천서를 제출한 이후, 소상공인 24를 통해 사업 신청
- (2단계, 요건검토) 소상공인 여부,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 확인·검토
- (3단계, 서류평가) 운영사와 소상공인 간 투자계약사항, 투자형태 등에 대해 투자요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
- (4단계,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소상공인 대표자 대면 발표를 통해 제품·서비스, 사업계획, 성장전략,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현장실사) 발표평가 후, 필요 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장 현장실사 실시

◆ 발표평가 참고사항

- (평가시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까지 접수된 신청 건 평가 진행
 - * 평균 평가소요기간 : 약 1개월 이내
- (심의방법) 소상공인과 민간 운영사는 발표평가 필수 참석
 - (소상공인) 사업추진계획, 채무상환 계획 등 아래 평가항목에 대한 발표 실시
 - (운영사) 추천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엑시트) 계획 등 발표 실시
 - * (평가시간) 총 25분으로 진행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평가항목 >

평가 지표	평가 내용
문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배경 및 지원 동기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등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과 차별적 강점 • 협약 기간 내 목표 달성 및 실행 가능성
성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계획의 완성도 • 사업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
기업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외부 네트워크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운영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사의 추천사유 및 성장지원 계획 평가

*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가점사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수혜업체, 강한 소상공인 등 수혜업체의 경우 발표평가 시 가점부여(중복불가, 최대 2점)하며,

*** 행안부, 문체부 등 타 부처에서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참고기] 수혜기업의 경우,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불가, 최대 1점)

※ 상세한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심의방법, 평가시간, 평가항목은 변경 될 수 있음

- (5단계,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기업 선정하고,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 * 소상공인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1)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LIPS I)

- (지원규모) 직접대출 360억원
- (지원내용) 민간운영사가 先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정책자금) 지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조건

- (대출한도) 기업당 투자금액의 최대 5배 이내(최대 5억원)
* 신청금액은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 상 추천 금액을 초과 불가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LIPS I) 예시자료 >

◆ 투자금액이 1억원인 업체 예시

- 소상공인 사업체 A가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로부터 1억원의 투자 유치 및 선투자 추천서 받은 경우



- ① 지원대상 미해당(대출제한사항 확인 등) 및 1차 심사·심의 결과 대출 부결 → **대출불가**
- ② 지원대상 해당, 심사·심의 결과 대출 실행 결정

* 심사·심의의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8%p까지 금리우대 지원(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우대금리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0.1%p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	△0.1%p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0.1%p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0.3%p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0.2%p
<p>*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신청일 기준 3년 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대출계좌별로 판단(단,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p>		

- (대출기간) 8년 (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 II)

□ 지원규모 : 사업화 지원 300억원

- (시드립스) 250개사 내외 (스케일업 립스) 50개사 내외
 * 유형별 지원규모는 신청현황 및 사업운영여건 등 고려하여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신제품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브랜딩·디자인 고도화, 해외진출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한도) 투자금의 3배, 최대 시드립스1억원, 스케일업2억원 (차등지원)
 - (총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
 - * (자기부담금 비율)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만원단위에서 올림 처리)

<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

① 사업화자금 7,000만원을 지원 받은 경우

구분	총 사업비(100%)	정부지원금(70%)	자기부담금	
			현 금(10% 이상)	현 물(20% 이하)
예시	100,000,000원	7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② 사업화자금 10,000만원을 지원 받은 경우 ※ 만원단위에서 올림처리 적용

구분	총 사업비(100%)	정부지원금(70%)	자기부담금	
			현 금(10% 이상)	현 물(20% 이하)
예시	142,870,000원	100,000,000원	14,290,000원	28,580,000원

③ 사업화자금 15,000만원을 지원 받은 경우 ※ 만원단위에서 올림처리 적용

구분	총 사업비(100%)	정부지원금(70%)	자기부담금	
			현 금(10% 이상)	현 물(20% 이하)
예시	214,290,000원	150,000,000원	21,430,000원	42,860,000원

< 사업화자금 지원항목(안) >

항목	상 세 내 역	
개발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비	• 브랜드(CI, 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비	• 마케팅·홍보 용역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전문가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재료구입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매장 모델링	• 사업자 소재지(본점) 또는 매장확장(지점)의 인테리어 등 매장모델링 * 단, 자산성 취득 제품(가구, 에어컨 등) 구입 불가	
해외진출비	• 해외 박람회 참가비, 물류비(또는 창고비), 통역비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	
	• 본 사업 달성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 * 자기부담금 50% 발생, 대표자만 가능	
현물	인건비	• 사업기간동안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인건비
	임차료	• 사업기간동안의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 •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내 기계·장비 임차료 및 관리비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1)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가능
- 2) 정부사업금 지원 시, 자기부담금 30% 매칭 필수이며, 선정 후 자기부담금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 될 수 있음
- 3)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는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세액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별도 부담
- 4)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5)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또는 회계법인)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집행서류 보완 등 서류 제출 미 협조 시 사업화자금 불인정 금액 등 발생 될 수 있음
- 6)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7) 추천받은 민간운영사,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 또는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용역(또는 전문가 수당 지급) 거래 불가
- 8)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 할 수 없음
* 선정 시, 집행서류요건 등 안내 예정이며, 목적 외 사용이 적발 시 사업화자금 환수 및 제재 등 조치
- 9) 매장 모델링과 해외진출비는 사업계획서(매장확장 및 해외진출계획)를 검토하여 본 사업 달성에 필요사항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투자 IR 역량강화 교육 및 투자자(AC, VC 등) IR 진단 컨설팅 등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수출·유통 바이어 매칭 등 판로개척 및 사업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예시 : 소비재 분야 소상공인 전시회 참가 지원, 현지·유통 바이어 매칭 상담회 등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해외진출 전략 등과 관련 교육 및 세무·법률·특허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 후속 연계지원

- LIPS I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II)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지원(안) >

구분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상환
내용	• 투자금 최대 5배, 5억원한도	• 기준금리+0.4%p	• 8년(3년거치, 자율설정가능) •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유의사항

- 1) 본 사업과 동일하게 지정된 운영사로부터 투자·추천 필수
- 2) LIPS I 과 LIPS II 의 평가 일정 중복 방지를 위해 동시 신청 불가
 - * 예)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II) 선정 후, 매칭융자 추천·신청·접수 가능
- 2) 예산소진, 대출제한사유 해당, 융심위 부결 등 대출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사업(지역신보·국민은행) 연계 지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안)>

구분	보증한도	보증기간	보증비율/취급은행
내용	• 최대 4억원 이내 * 동일기업당 총 보증금액 8억원 이내	• 최대 5년	• 최대 95% • 국민은행

◆ 유의사항

- 1) 립스 프로그램(LIPS I, LIPS II)에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지원되는 연계지원사업
 - * 보증상품 문의·상담은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대표번호:1588-7365)
- 2) 보증한도초과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사항 해당 시 보증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5

신청기간·방법

(1)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LIPS I)

- (신청기간) 2026년 4월 1일(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 단, 시설자금만 단독 신청 시,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 (제출서류) '[참고3] 대출신청서류 목록' 참조

(2)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 II)

□ (신청기간) 2026년 4월 1일(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유의사항

-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주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 공동대표가 주 사업참여자라면 소상공인24 신청서 상 명시해야 하며 **중도에 주 사업 참여자를 변경할 수 없음**
-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모바일 불가), 신청기간 중 "임시저장" 클릭 시, 신청서 등 내용 수정·삭제가 가능하나, "신청완료" 클릭 시, 일체 내용 수정·삭제 불가**

□ (제출서류) 해당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 JPG 으로 변환 후 업로드

< 제출서류 내역 >

구분	제출서류명	마이데이터 대체가능	비고	
신청 · 접수	1	사업신청서	-	소상공인24 입력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3	사업계획서[서식2 참조]	-	작성 후 첨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 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	미동의 또는 미연동 시 별도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6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7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8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건)	-	관련 서류 첨부
	9	(우대지원) 우대지원 관련 증빙 서류	-	
선정	10	(공통)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선정 후 추후 서류 제출
	11	(개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12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13	(공동대표 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	

◆ **유의사항**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 작성·첨부
-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접수일 이후인 경우 인정**
- 3) 항목당 최대 30MB까지 허용되므로 용량 초과 시 사진 등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 4) 항목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파일(알집 등)로 업로드 필요
- 5)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시 필수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6) **선정 후**,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금관련 서류 등 **선정 시 서류 제출 필요**
* 단, 선정 후 **국세/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중소기업확인서**

- 1)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되며, 소상공인임을 인정하는 유효기간일 경우는 자동 반영되어 확인 가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인정불가
** '[소기업]'만 기재된 경우는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으로 참여 불가
- 2) 단, 마이데이터를 통한 제출은 **발급이력이 있어야 자동 제출되므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를 통해 사전 신청 필요(5~10일 내외 소요)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6

유의사항

(1) 민간투자 및 추천

- 중기부가 지정한 민간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서를 부여받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립스(LIPS) 프로그램 사업' 신청 가능
-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제안서[서식1]를 작성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사[별첨]에게 e-mail 제출
* 투자제안서 제출 후 평균 4주 이내 회신 예정이며, 검토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음
- 복수의 민간 운영사에 투자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각 사업 신청을 위한 '선투자 추천서'는 1개 기관에서만 발급
-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투자의 형태는 신주투자, 사업권투자, 지분 전환계약 등으로 한정 * 사업별 일부 상이

(2)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LIPS I)

- 先투자는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만기 시 까지 투자유지 필수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투자 후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투자일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하되, 추천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
 - * 추천서 유효기간 경과 시, 투자기관에서 추천서 재발급 필요
- 소상공인은 공단에서 매칭융자 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내역과 증빙을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공단에서는 매칭융자 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음

(3)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LIPS II)

- ‘시드립스’와 ‘스케일업 립스’ 동시 신청 불가
-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 미 제출 시, 협약 불가 처리 (이행보증증권 비용 소상공인 별도 부담)
- 신청·선정기업(대표자)가 동 공고문, 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제재 등 조치 될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지침,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대표자)에게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대표자)에게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사·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기업(대표자)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대표자)은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본 사업 담당기관(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7

문의처

- 투자·추천 관련 문의
 - ‘[별첨]’ 내 운영사 별 연락처 참조
 - * 내선번호가 없는 운영사는 이메일로 투자 관련 문의 실시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 I) 사업 관련 문의처
 - (공단) 창업지원실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 042-363-7740, 7724
-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II) 사업 관련 문의처
 - (주관기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 070-7588-1823, 1820, 1824, 1826
 - *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립스본부

참고1

LIPS 프로그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원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의업 * 단, 보건의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2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용자(LIPS I) 대출제한사항

-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에 대하여 대출신청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1. 세금체납	<p>-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p> <p><예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p>-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신용도판단정보</td> <td>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td> </tr> <tr> <td>공공정보</td> <td>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구 분	내 용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연체	<p>-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연체 중 2.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p>-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p> <p><자가사업장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구 분	내 용
	<p><자가주택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p><권리침해사실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5. 휴·폐업	<p>-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p> <p>*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p>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p>- 신청업체가 동일 연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 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한 자금의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동일한 자금의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한계기업	<p>-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p><예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제2호 및 제3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제3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8. 부채비율 70% 초과	<p>-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p> <p><예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부채비율 70% 초과이지만 제9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구 분	내 용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 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예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div>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에서 성공불용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대출금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제재조치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3.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11.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12. (법인기업) 책임경영 심사 관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축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
13. 사회적 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4. 허위 또는 부정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15. 3회 이상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예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p>*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p> </div>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은 「2026년도 중소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	---

□ 대출신청 자료

① 공통자료

구분	서류명	비고
① 대출신청 작성서류	- [필수]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 [필수]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가진단 - [필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필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각1부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필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대표이사>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여신협) - [필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여신협)	
②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1부

구분	서류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③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택1부
	<p><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 위 서류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서식8>'로 제출할 수 있음 	1부
④ 상시 근로자수 확인	<p><상시근로자 없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p><상시근로자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택1부 (1개월 이내)
⑤ 세금납부 증빙	<p><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보증인(법인), 실제경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⑥ 주소확인	<p><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표시 : 주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1부 (1개월 이내)
⑦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p><개인기업,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제출(발급)용"만 인정하며,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각1부 (1개월 이내)

구분	서류명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p><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 “제출(발급)용”만 인정하며,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거주주택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p>각1부 (1개월 이내)</p>
	<p><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서식9>’ 제출 <p>*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p>	<p>해당 시 1부</p>
	<p><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서식10>’ 제출 <p>*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거주 하는 경우 등</p>	<p>해당 시 1부</p>
<p>㉓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p>	<p><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p> <p><개인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p> <p><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p> <p><보충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인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법인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p>택1 (1개월 이내)</p>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등을 수집할 수 있음

② 법인·시설자금 추가제출 자료(해당 시)

구분	서류명	비고
① 법인기업 추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해당 시 각1부
② 법인기업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해당 시 각1부
③ 시설자금	- 시설투자계획서<서식12> - 기계설비 견적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 자체제작인 경우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해당 시 각1부

③ 금리우대·기업평가 추가제출 자료(해당 시)

구분	서류명	비고
① 금리우대	<p><정책우대 유형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 컨설팅)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p><사회안전망 유형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증서 <p><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우대 유형 : 소진공 컨설팅,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 정책배려 유형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 • 성실상환 유형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또는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등)
② 가점사항	<p><수출실적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발행은행, KTNET) <p><고용증가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p><지식재산권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구분	서류명	비고
	<p><ESG 관련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p><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또는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등)
③ 전문성 확인	<p><전문자격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 중인 업종과 관련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 사본 중 택일 <p><전문인력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④ 거래내역 확인	<p><업력 3년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월별 또는 분기별) <p><업력 3년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월별 또는 분기별) - (합계표가 없을 시) 판매처 또는 구매처 계약서 사본 	
⑤ 생산성 확인	<p><외주업체 거래 중인 소공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업체와의 공급 관련 계약서 사본 	
⑥ 경영능력 확인	<p><사업장 임차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지급 관련 은행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p><상시근로자 보유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월간 임금 지급 관련 은행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p>* 단, ①공통자료 - ④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p>	
⑦ 매장·점포 확인	<p><통신판매업종 해당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⑧ 기타	<p><기타 자격 또는 교육 이수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 중인 업종과 관련한 전문자격증(예시 : 바리스타자격증) 또는 소진공 외 타 기관에서 수강한 전문교육 이수증 사본 	

※ 원활한 대출 심사를 위해 위 목록 중 보유한 모든 자료는 신청 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보유 여부 확인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 대표자 외 제3자의 개인정보(성명 중 가운데 글자, 생년월일 등)는 가림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자료

구분	서류명	비고
대출금 사용내역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 사용내역표 - 대출금 사용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해당 시 각1부

◆ 주관기관 : (사)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 국내 초기 스타트업 투자 및 성장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들의 연합체

- 회원사(AC, VC, CVC, 기술지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300여개사 / 임직원 : 30여명
- 업계 권익 보호 및 이해 증진: 투자 기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제도 개선 추진
- 네트워크 및 협력 문화 조성: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투자 연계를 지원
- 산업 성장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연구, 데이터 분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및 산업 고도화 지원

○ (주요연혁)

- (2025. 03.) 스타트업 스튜디오 활성화 정책 토론회 주관
- (2025. 02.) 2024 대한민국 초기 스타트업 투자 산업생태계 설문조사 보고서 발간
- (2025. 01.) 벤처스퀘어 공동 주최 '스타트업 생태계 기자단' 발족
- (2024. 12.) 국내 최대 초기투자 생태계 포럼 '스타트업 빌더스 어워즈' 개최
- (2024. 11.) 글로벌 엔젤투자 국제기구 WBAF와 협약 갱신
- (2024. 11.)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4. 10.) 베트남 사무소 설치
- (2024. 09.)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MOU체결(상하이딩즈상표대리유한공사)
- (2024. 08.) 후속투자 지원 프로그램 오프라인 네트워킹 버전 BLINK-N 런칭
- (2024. 07.) (사)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사명 변경 및 출범
- (2024. 03.)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통합 합의

○ (주요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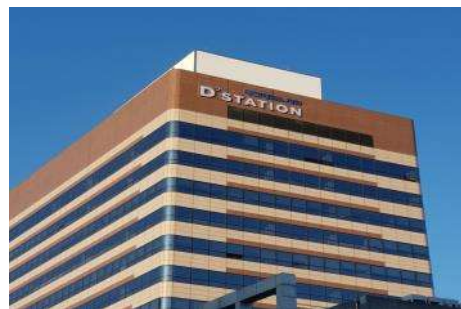
- 온·오프라인 투자연계 활동 약 350회, 투자연계 금액 약 400여억원
-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약 1,000여명) 및 VC스프린트를 통한 초기 투자심사역 양성(약 240명)

○ (보유POOL)

- 투자심사역 약 1,000명, 국내 협력기관 50여개사, 글로벌 파트너 기관 해외 6개국 12개사
- * (프로그램) BLink, 시드 IR 투자 라운드 등 딜소싱 및 후속투자, 클럽하우스 네트워킹 프로그램,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서밋, 엑셀러레이터 인사이트 포럼, 크로스보더 에코시스템 빌더스 포럼,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및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투자심사역 성장과정, 창업투자 산업도메인 역량강화 교육, 프리팁스 연관 프로그램 전반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서울 본원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대전 교육원

참고 5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II) 소상공인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표

구분	문항	내용	자가진단	
① 지원 대상	1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고 사업운영기간이 업력 1년 이상인가? * 상세한 내용은 동 공고문 상 "2. 공통자격 및 신청제한" 확인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2번 문항)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지원불가)
	2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로부터 최근 3년 이내 투자를 유치했는가? * "아니다"로 선택한 경우, 지정된 운영사에게 투자유치가 필수이며, 투자유치 희망 시, [서식]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60개사 중 원하는 운영사에게 투자제안서 및 기업소개서 등 제출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3번 문항)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지원불가)
	3	본 사업의 국세/지방세 연체 등 신청제한에 해당되는가? * 상세한 내용은 동 공고문 상 "2. 공통자격 및 신청제한" 확인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지원불가)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4번 문항)
	4	[참고7]의 동시수행 제한 정부사업을 지원 받고있는가? * 동시수행 제한 정부사업 목록은 '참고7' 확인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지원불가)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지원대상)
3번 문항에서 '그렇다'인 경우 본 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며, '아니다'인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임으로 아래의 '지원자격' 자가진단 확인 필요				



구분	문항	내용	자가진단	
② 지원 자격	4	중기부가 지정한 민간 운영사로부터 최근 3년 이내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지원가능) (5번 문항)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지원불가)
	5	최근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으로 투자를 유치했는가? * "아니다"로 선택한 경우, '시드립스' 지원유형에 해당되며, 최대 1억원 이내 차등으로 사업화 지원(자부담금 30% 발생) - 상세한 내용은 동 공고문 상 "2. 지원대상" 확인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6번 문항)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시드립스 지원가능)
	6	5번 문항의 투자금액 기준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6-1', '6-2'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스케일업' 립스 지원 가능		
	6-1	직전년도(2025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의 50% 이상 인지? (세부매출액 기준은 '참고6' 확인) * 예) 제조업 - 소기업 매출 120억원이며, 전년도 매출 60억원 이상 달성 도소매 - 소기업 매출 50억원이며, 전년도 매출 25억원 이상 달성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지원가능)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6-2번 문항)
	6-2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직·간접 수출액 3만불 이상인가? * 3만 불 = 30,000달러 (\$30,000)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지원가능)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지원불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후, **소상공인 24(www.sbiz24.kr)** 통해 사업 신청·접수

참고 6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II)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19.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7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II) 동시수행 제한 정부지원사업

연번	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로컬창업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4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5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6	예비창업패키지			
7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8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9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10	초기창업패키지(투자연계형)			
11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12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13	창업도약패키지(투자연계형)			
14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15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16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17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18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19	팁스R&D			
20	창업중심대학			
21	재도전성공패키지			
22	제품화 ALL-In-One 팩			
23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24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25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7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8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29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30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31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32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33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34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35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36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37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38	(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39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40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41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42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43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43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평화 창업 지원사업			

참고 8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II) 평가 가점 대상사업

구분	연계사업	가점	증빙자료
중기부 (로컬창업육성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점	- (자격)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증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기업가형소상공인 확인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2점	- (자격)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수혜업체 - (증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기업가형소상공인 확인서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2점	- (자격)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수혜업체 - (증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기업가형소상공인 확인서
중기부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1점	- (자격) '25년부터 해당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 (증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에서 발행한 확인 공문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	1점	- (자격) 최근 4년간 해당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22-25년) - (증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에서 발행한 확인 공문
	지역발전특구 (로컬만)	1점	- (자격) 공고 전년도 우수특구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관련 기업 중, 지자체 추천절차를 거쳐 우대대상으로 확정된 자 - (증빙) 중소기업부(특구운영과) 통보 공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1점	- (자격) 공단에서 인정한 정식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업체 - (증빙) 해당 공단 담당 사업부서를 통해 별도 확인 예정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0.5점	- (관련지역) 해당 사업에 선정된 51개 지자체('18~'25년) * '26년 신규 청년마을 선정지 10곳 포함도 가능(4월 중 최종 선정) - (자격)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한 청년단체·기업의 대표 혹은 운영진(1년 이상 활동)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확인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청년마을명, 운영기간, 운영내용 및 역할 등이 포함된 확인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0.5점	- (관련지역) 해당 사업에 선정된 38개 지자체('23~'25년) - (자격)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로컬브랜딩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 직인이 있는 추천서
	인구감소지역 내 소상공인 (로컬만)	0.5점	- (자격)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해 있는 소상공인 - (증빙) 별도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0.5점	- (관련지역)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문화도시(1~4차, 24곳)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13곳) - (자격)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문화도시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의 직인이 있는 문서(공문 등)
국토교통부 등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0.5점	- (자격)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지 내 소상공인 - (증빙) 지역활력타운 선정 보도자료, 지역활력타운 선정지 내 입주를 증빙할 수 있는 지자체 확인서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0.5점	- (자격) 해당 사업으로 준공('19~'25년)한 시설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사업을 운영중인 운영주체(단, 중소기업부에서 정한 업종 등 조건 필수) - (증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공문
	농촌형 비즈니스 확산 사업	0.5점	- (자격) 해당 사업에 선정된 업체 * '26년 신규 선정 업체 포함도 가능 2월 중 최종 선정 - (증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결과 안내 공문
	농촌융복합산업 혁신 거점 조성 사업	0.5점	- (자격) 최근 5년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받은 업체('20~'25) - (증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결과 안내 공문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농진청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0.5점	- (자격) 해당 사업으로 구축('10~'24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창업보육과정을 이수한 자(개인, 법인 등) - (증빙)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보육 교육과정명 '가공' 관련 교육(인정) 참여자(개인, 조직체 등), 교육기간(횟수) 및 이수시간등이 포함되고, 해당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이있는 '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
지재처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	0.5점	- (자격) 지식재산센터의 'IP창출 종합패키지('22~'25년)' 수혜 기업 - (증빙)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에서 발행한 수혜사실 확인서류(공문 등)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0.5점	- (자격)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혜 기업 - (증빙)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발행한 수혜사실 확인서류(공문 등)
기재부	중소기업 기술마켓	0.5점	- (자격)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술·제품 등록 기업 - (증빙)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